

일본 PFOA 규제 정보

KAKEN information(2021. 04. 26.)



PFOA(Perfluorooctanoic acid) 또는 그 염이 화학물질의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되었으며, PFOA 및 그 염을 사용한 일부 제품은 일본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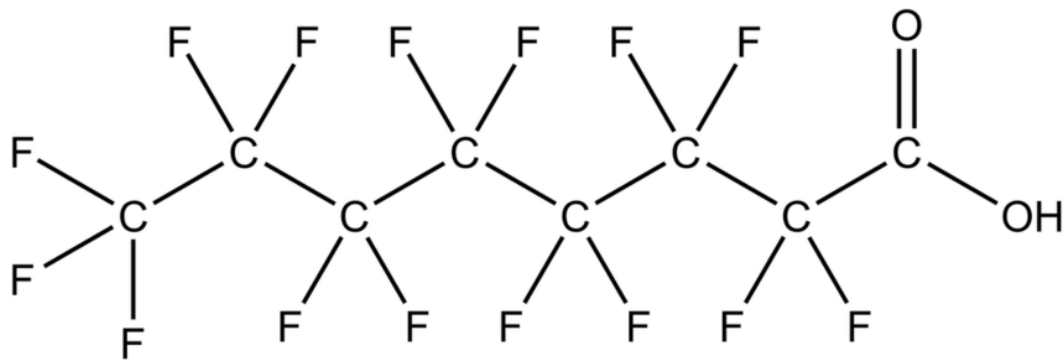
❖ 주요 내용

- 개요
 - 2021년 4월 21일 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공포
- 내용
 - ① 'PFOA 또는 그 염'이 화학물질 심사규제법의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
 - ② 아래 제품에 PFOA 또는 그 염이 사용될 경우 수입 불가
- 시행일자 : 2021년 10월 22일
- 대상 제품
 - ✓ 내수성능 또는 내유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가공한 종이
 - ✓ 발수 성능 또는 발유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가공한 원단
 - ✓ 세정제·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반사 방지제
 - ✓ 도료 및 광택제
 - ✓ 접착제 및 싺링용 충전료(싺링필러)
 - ✓ 소화기, 소화기용 소화약제 및 소화거품
 - ✓ 토너·발수 성능 또는 발유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가공한 의복
 - ✓ 발수 성능 또는 발유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가공한 바닥 깔개·바닥용 왁스
 - ✓ 업무용 사진 필름(인화지 등)

❖ PFOA 및 그 염이란?

- PFOA는 지금까지 방오, 발수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제품에 폭넓게 사용되어왔다. 쉽게 접할 수 있는 용도로는, 후라이팬의 테프론 가공이나 의류의 발수제 등이 있다. PFOA는 난분해성이나 생물체내에의 장기적인 축적성으로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며, 2019년 5월 스톡홀름조약(POPs조약)의 부속서 A에 추가되었다.

▼ PFOA(퍼플루오로옥타노익 에시드)의 구조식



(PFOA는 탄소수(C8)의 구조를 가지는 과불소화합물(PFCs)의 1종이다.)

❖ 화학물질 심사규제법의 제 1종 특정 화학물질이란?

- 화학물질 심사규제법의 정식명칭은 '화학물질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'로 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. 화학물질의 사전 심사나 제조·수입 수량의 파악등의 관리, 사용 제한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. 대상 화학물질은 리스크별로 분류되며, 그 중 하나가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다. 제1종 특정 화학물질은, 난분해성이나 고축적성, 장기 독성 및 고차 포식 동물에의 만성 독성을 가지는 화학물질이다. 물질 그 자체에 대해 일본 내에서의 사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수입에 규제가 미치는 경우가 있다.

❖ 개정 경위와 이후의 흐름

- EU(유럽)에서는 REACH규칙의 제한대상물질리스트(부속서XVII)에 기초하여, 2020년 7월부터 「PFOA를 25ppb초과하여 함유하거나, PFOA관련물질을 합계 1000ppb초과 함유하는 혼합물이나 성형품」의 제조 및 시장유통이 원칙 금지되고 있다.
- 이번 'PFOA 또는 그 염'이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의 지정된 것은, 2019년 5월 'PFOA 또는 그 염'이 스톡홀름 조약(POPs 조약) 부속서 A(폐절)에 '잔류성 유기오염물질'로 추가 지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. 앞으로는 같은 시기에 POPs조약의 부속서에 추가된 PFOA 관련 물질도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될 예정이다.